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(9급 1명), 국립목포병원에 진단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(8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질병대응센터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, 질병대응센터, 국립검역소 및 국립검역소 지소의 일부 부서장 보임 직급에 간호사무관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0. ~ 6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본문 중 “약무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약무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각각 “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약무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.”를 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9 제1호에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19”를 각각 “120”으로 하고, 4급 이하 “118”을 “119”로 하며, 제2호에 총계 및 일반직 계 “98”을 각각 “99”로 하고, 4급 이하 “97”을 “9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8]

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2항 본문 관련)

총계	666
일반직 계	666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	2
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4
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25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전산사무관 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4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29
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5
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약무주사·간호주사·전산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	99
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건주사보·의료기술주사보·약무주사보·간호주사보·전산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	154
행정서기·사회복지서기·보건서기·의료기술서기·간호서기·전산서기·공업서기·시설서기	219
행정서기보·사회복지서기보·보건서기보·전산서기보 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	62
운전서기보	6
위생서기보	1
방호서기보	2

보건연구관	24
보건연구사	23
보건운영서기보	6
기계운영서기보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질병대응센터) ① (생 략)	제22조(질병대응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질병대응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에 운영지원과·감염병대응과·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조사과를 두되,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,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, 만성질환조사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약무사무관·전산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전산사무관</u>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국립검역소) ① (생 략)	제23조(국립검역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사무	② -----

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
기술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전산
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
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
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 략)

제29조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
원의 운영) ① 「행정기관의 조
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
조제3항 및 「공무원임용령」
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
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
간선택제채용공무원(이하 “시
간선택제채용공무원”이라 한
다) 정원은 별표 8 제2호와 같
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
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
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
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
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-----약무사무관 · 간호
사무관 · 전산사무관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
원의 운영) ① -----

----- 시
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
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
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
할 수 있다.

<삭 제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9]

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3항 본문 관련)

1. 국립마산병원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19</u>	<u>120</u>	+1
일반직 계	<u>119</u>	<u>120</u>	+1
·	·	·	
4급 이하	<u>118</u>	<u>119</u>	+1

2. 국립목포병원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98</u>	<u>99</u>	+1
일반직 계	<u>98</u>	<u>99</u>	+1
·	·	·	
4급 이하	<u>97</u>	<u>98</u>	+1